

형사사건 기록 편철·보존기간 책정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Filing Process and Implementing a Retention Period for Criminal Case Records

박성진 (Sung-Jin Park)*

목 차

- | | |
|---------------|---------------------|
| 1. 서론 | 2.3 기록 편철현황 |
| 1.1 연구 목적 | 3. 개선방안 |
| 1.2 연구 범위·제한점 | 3.1 기록관의 형사사건 기록 관리 |
| 2. 관리현황과 문제점 | 3.2 사건유형별 구분 편철 |
| 2.1 이관현황 | 3.3 보존기간 책정기준의 구체화 |
| 2.2 보존기간 책정현황 | 4. 결론 및 제언 |

<초록>

공공기록물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한국 기록관리의 양적 성장은 괄목할 만하다. 현재 디지털기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일은 기록관리 분야의 가장 시급한 현안과제로 대두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관리 현장에서 영구보존 대상 기록을 선별하는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 글은 경찰·검찰이 생산한 일부 형사사건 기록을 대상으로 각 생산기관별 기록물 이관현황, 기록물 편철방식, 보존기간 책정방식의 문제점을 검토한 사례연구이다. 그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형사사건 기록 평가·분류의 기초가 되는 형사사건 기록 편철 및 보존기간 책정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형사사건 기록, 기록 이관, 보존기간 책정, 기능분류 체계, 기록 편철

<ABSTRACT>

Since the legislation of the act for public records, there has been a remarkable growth in records management in Korea. Recently, how to efficiently handle digital records has become an urgent issue in Korea. However, the appraisal process for (selection) archives seems inappropriate. This study reviewed the problems of each archiving process for records created by police departments and prosecutors' offic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view, I proposed an improvement plan for the selective and appraisal acquisition of records.

Keywords: criminal case records, records transfer, appropriation of a retention period, business reference model, filling records

*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psj1111@korea.kr)

■ 접수일: 2017년 4월 30일 ■ 최초심사일: 2017년 5월 8일 ■ 게재확정일: 2017년 5월 25일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7(2), 189-205, 2017. <<http://dx.doi.org/10.14404/JKSARM.2017.17.2.189>>

1. 서론

1.1 연구 목적

디지털기록의 효율적 관리는 기록관리계 공통의 현안이자 해결과제 중의 하나이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 역시 2015년 각 기록관으로부터 250만 여 건의 전자기록을 이관 받아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더 나아가서 국가기록원은 새로운 유형의 전자기록, 다양한 행정정보데이터 세트 등의 관리, 장기보존을 위한 전자기록 관리체계의 고도화를 향후과제로 삼고 있다(이상진, 2016).

기록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로까지 불리는 전환기임에도 불구하고 주요기록의 영구보존을 위한 기록관리 현장의 평가·분류 업무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이는 국가기록원과 각 기관의 기록관 또는 아키비스트의 여건·인식 부족에서 기인하기도 하며, 제도적 결함일 수도 있으며, 관련법령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주요기록의 비공개 또는 미이관 등으로 평가·분류를 둘러싼 논의가 학계를 중심으로 풍부하게 진전되기 어려웠던 우리사회 한 단면의 반영일 수도 있다.

기록관리 현장에서 기록 평가·분류에 관한 구체적 업무행위는 기록관리기준표 운영과 기록편철 과정 등에 반영된다. 현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을 비롯하여 각 기관 기록관의 기록관리 프로세스 중 특히 기록 평가·분류 업무는 학계의 이론적 논의 수준에 비추어 매우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이 이 글의

출발점이다. 형사사건 기록의 편철·보존기간 책정방식 등의 사례검토를 통해서 우리의 기록 평가·분류업무 수준을 공유하고 실무자의 입장에서 해당사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경찰·검찰의 각 기록관은 영구보존 대상 형사사건 기록을 공공기록법 규정대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에 잘 이관하고 있는지를 살핀 후, 국가기록원에 이관 완료한 형사사건 기록의 기록철 구성 및 보존기간 책정 방식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이 이 논문의 구체적 과제이다.

현재 공공기록법에 따라 특수기록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찰과 검찰은 전체 특수기록관 중에서 가장 많은 기록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고 있다.¹⁾ 뿐만 아니라, 해당기관들은 형사사건 기록에 대한 분류·편철, 보존기간 책정 등에서 자체 내규에 따르는 관행적인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형사사건 기록 생산기관의 업무와 기록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현재와 같은 관행적인 방식들이 적절한 것인지, 개선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이제부터라도 시작할 필요가 있다.

형사사건 기록 관리에 직접 관련된 선행연구는 거의 없다. 그동안 법원이 생산한 판결문을 제외하면 경찰이나 검찰이 생산한 형사사건 기록은 거의 공론의 장에 노출되지 않았다. 학계의 연구자들 역시 접근이 어려웠기 때문에 관련연구가 드문 것은 당연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최근 검찰청 현장에서 아키비스트로 근무

1) 2015년 말 기준으로 특수기록관의 기록물 이관수량을 보면, 통일분야 약 900권, 외교분야 약 20,000권, 안보분야 약 65,000권, 정보분야 약 400권, 수사분야 약 320,000권이다.

하는 이현정이 처음으로 형사사건 기록 관리에 관한 논문을 제출하였다(이현정, 2010). 이 논문에서 그는 형사사건 기록의 유형, 종류, 특성을 밝히고 분류체계에 대한 문제점 정리와 함께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그는 형사사건 기록을 사안과일의 대표적 유형으로 규정하고, 사건단위별 분류를 기본으로 하되, 사건단위 아래에 다시 업무절차별 분류체계로 전개되는 모형을 제안하였다. 분류체계 분석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형사사건 기록은 검찰청 기록물분류기준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검찰정보조사무규칙 등 검찰 내부규정에 따라 보존기간이 책정되고 있는 현황 등을 소개한 바 있다. 검찰청 형사사건(영구)의 특징, 형사사건 업무처리 절차에 관해서는 대검찰청이 간행한 ‘2011 검찰청 형사사건기록 DB구축사업 백서’를 참조하였다. 형사사건 분류체계와 보존기간의 연동 등에 관해서는 기능분류만으로 기록을 집합화하는 운용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설문원의 논문에서 도움을 받았다(설문원, 2013). 본 논문이 본격적으로 분류체계를 다루는 연구는 아니므로 분류체계 관련 다수의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는 제외하였다.

1.2 연구 범위·제한점

경찰과 검찰 등 수사분야 기관이 생산하는 형사사건 기록에 대한 평가·분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의 검토가 필요하다.

기록 평가·분류 관련 이론적 동향 뿐만 아니라 경찰·검찰의 역할과 기능 분석, 수사의 시작과 종결과정 및 각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의 유형 및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 정부기능분류체계와 기록분류체계의 정합성 검토 등이 대표적이다. 이 글에서는 필요할 경우만 선행의 연구결과를 참조하기로 하고 이 문제들을 직접 다루지는 않는다. 국가기록원에 이관 완료한 형사사건 기록 최종 결과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기록 평가·분류의 문제에 접근해 보자는 것이 이 논문의 취지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경찰·검찰의 각 기록관에서 영구보존 대상으로 선별하여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형사사건 기록 실물을 대상으로 기록의 평가·분류의 문제점을 검토한 일종의 사례연구이다.

본 논문에서 말하는 형사사건 기록이란 공공기록법 제14조(특수기록관) 제1항의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중 수사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생산한 기록이며, “수사·재판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²⁾을 말한다. 경찰, 검찰, 법원 등이 생산주체이며 각 기관에서 생산된 기록은 최종적으로 사건을 기소한 해당 검찰청이 편철·관리하고 있다. 다양하게 생산되는 형사사건 기록 중에서 이 글의 검토대상은 중앙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Central Archives Management System, 이하 CAMS로 표기함)에 등록된 검찰의 ‘형사사건기록’과 ‘형사사건부’, 경찰의 ‘수사종결철’·‘사건종결철’·‘내사종결철’ 등 일부 주요유형 형사사건 기록의

2)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조 1호(법무부령 제880호, 2016. 10. 19. 일부개정). 실제로 형사사건 기록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즉 위 검찰보존사무규칙에서 정의하는 용어일 뿐만 아니라, 기록관리 현장에서는 기록철명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이 글에서 기록철명으로 사용할 때는 ‘형사사건기록’으로,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조 1호에서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할 때는 ‘형사사건 기록’으로 표기한다.

이관현황, 편철현황, 보존기간 책정현황 검토를 분석대상으로 한정하였다. 검토대상 기록 추출 방법은 2015년 말 기준으로 CAMS의 생산기관 검색, 키워드 검색 등을 통해서 추출한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 수량과 일부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럼에도 해당 검토주제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는데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형사사건 기록만을 검토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각 기록관 단위에서 형사사건 기록 관리와 관련된 또다른 사례들을 간과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밝혀 둔다.

2. 관리현황과 문제점

2.1 이관현황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주요기록의 물리적 이관여부에 대한 기관별 비교를 통해서 먼저 형사사건 기록의 이관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해 보자. 형사사건 기록 중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검찰의 '형사사건기록'과 '형사사건부', 경찰의 '수사종결철'의 기관별 이관현황이 검토대상이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은 현재 검찰이 생산한 '형사사건부', '형사사건기록'을 각각 11,725권, 11,635권 소장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록법의 이관연기 규정에 따라 생산 후 30년

이 경과하였으나 전국의 각 검찰청이 소장하고 있는 '형사사건기록'이 약 3만 8천여 권이다.³⁾ 결국 '형사사건기록'이라는 기록철명을 가진 기록 약 5만여 권이 각 검찰청과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다.

〈표 1〉을 보면, 18개 지방검찰청의 '형사사건기록' 이관 수량의 편차가 매우 크다.⁴⁾ 이관연장으로 각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 수량을 합쳐 보면, 서울중앙지검이 12,616권, 부산지검이 11,221권으로 2개 기관 기록이 23,837권으로 전체 이관대상 기록의 약 60%를 차지한다. 물론 지역별 인구비례를 감안하더라도 2,217권(대구지검)부터 800여 권(수원지검)까지 차이가 크게 난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경우, 이관 및 이관연장 실적이 전무하다. '형사사건부' 이관현황 역시 유사하다. 대구지검의 기록 이관량이 3,512권으로 가장 많고 인천지검은 281권에 불과하다.

〈표 2〉는 표의 '편철명 사례'에 제시된 기록철명을 키워드로 하여 CAMS 검색을 통해 각 지방경찰청·소관 경찰서별 이관현황을 정리한 내용이다.

각 지방경찰청의 '수사종결철' 이관여부 역시 각 기관별 수량에 차이가 크다. 예컨대 전남지방경찰청은 1,734권을 이관한 반면 인천지방경찰청은 23권을 이관하였다. 또한 전국의 16개 지방경찰청 중, 국가기록원으로 '수사종결철'을 한 권도 이관하지 않은 기관이 충북·제주·울산지방경찰청 3곳이며, 대전지방경찰청

3) 대검찰청 이관연장 신청 형사사건기록 현황: 1차('12.7.20.) 17,486권 / 2차('12.12.21.) 18,339권 / 3차('13.12.30.) 19,538권 / 4차('15.3.7.) 208권임. 중복 신청한 권수를 제외하면 대략 3만 8천여 권이다.

4) 물론 형사사건 기록을 생산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해당 8개 지방검찰청의 이관연장 기록 건수를 보면, 서울남부지검 1,196권, 서울북부지검 942권, 서울동부지검 645권, 의정부지검 1,106권, 제주지검 369권, 부산지검 11,221권, 울산지검 42권이다.

〈표 1〉 지방검찰청별 형사사건부·형사사건기록 이관현황(권)(2015.12. 현재)

구 분	소계	~1950년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대검찰청	형사사건부	331	26	71	108	92	22	12	-
	형사사건기록	4	-	-	4	-	-	-	-
고등지검(5개)	형사사건부	291	9	43	54	60	73	51	1
	형사사건기록	-	-	-	-	-	-	-	-
서울중앙지검	형사사건부	1,227	7	130	379	360	322	29	-
	형사사건기록	7,313	4,266	1,820	1,227	-	-	-	-
서울남부지검	형사사건부	370	-	-	-	118	252	-	-
	형사사건기록	-	-	-	-	-	-	-	-
서울북부지검	형사사건부	305	-	-	-	103	202	-	-
	형사사건기록	-	-	-	-	-	-	-	-
서울동부지검	형사사건부	372	-	-	-	118	225	29	-
	형사사건기록	-	-	-	-	-	-	-	-
서울서부지검	형사사건부	12	-	-	-	-	2	10	-
	형사사건기록	-	-	-	-	-	-	-	-
수원지검	형사사건부	965	3	52	146	214	545	5	-
	형사사건기록	5	-	-	-	-	5	-	-
인천지검	형사사건부	281	-	27	62	62	129	1	-
	형사사건기록	930	57	768	104	-	1	-	-
의정부지검	형사사건부	209	-	2	48	53	105	1	-
	형사사건기록	-	-	-	-	-	-	-	-
춘천지검	형사사건부	776	-	75	216	196	287	2	-
	형사사건기록	227	1	10	206	1	-	9	-
광주지검	형사사건부	1,608	107	192	451	406	391	55	6
	형사사건기록	412	77	271	54	1	5	4	-
전주지검	형사사건부	1,080	41	188	263	286	215	61	26
	형사사건기록	1,077	474	475	112	14	2	-	-
제주지검	형사사건부	220	16	33	59	40	68	4	-
	형사사건기록	-	-	-	-	-	-	-	-
청주지검	형사사건부	582	11	70	164	160	174	3	-
	형사사건기록	1,337	747	538	50	2	-	-	-
대전지검	형사사건부	1,331	43	205	292	299	488	4	-
	형사사건기록	218	47	110	58	-	-	3	-
부산지검	형사사건부	2,517	44	329	786	583	774	1	-
	형사사건기록	-	-	-	-	-	-	-	-
대구지검	형사사건부	3,512	141	648	1,108	705	904	6	-
	형사사건기록	49	1	4	-	12	22	10	-
울산지검	형사사건부	169	-	-	-	-	158	11	-
	형사사건기록	-	-	-	-	-	-	-	-
창원지검	형사사건부	1,091	30	159	240	257	391	10	4
	형사사건기록	18	1	2	10	-	3	2	-
기타	형사사건부	3	1	-	-	1	-	-	1
	형사사건기록	45	16	18	-	-	7	4	-
계	형사사건부	17,252	479	2,224	4,376	4,113	5,727	295	38
	형사사건기록	11,635	5,687	4,016	1,825	30	38	35	4

* 이 통계수치는 중앙연구기록물관리시스템(CAMS)에서 추출한 것임. 이하 논문에 제시된 통계 역시 동일하므로 별도의 출처 표시를 하지 않기로 함.

〈표 2〉 지방경찰청별 〈수사종결철〉 이관현황(2015.12. 현재)

구 분	이 관 현 황		
	수량(권)	관할 경찰서별 이관내역	편철명 사례
경기지방경찰청	275	41개 경찰서 중 4개 기관에서 이관(10%)	• 수사종결사건(송치)철/수사종결철/ 수사종결사건철/수사첩보종결철/(내 사사건) 수사종결철/(진정사건) 수사 종결철/수사종결사건(송치사건)철/ 수사종결사건철(사건인계)/수사종결 사건철(미제)/수사종결사건철(의견 서)/송치부분철(수사종결철)/교통사 고수사종결철 등
강원지방경찰청	235	17개 경찰서 중 7개 기관에서 이관(41%)	
충남지방경찰청	63	15개 경찰서 중 1개 기관에서 이관(7%)	
충북지방경찰청	0	12개 경찰서 모두 미이관(0%)	
경북지방경찰청	1,118	24개 경찰서 중 13개 기관에서 이관(54%)	
경남지방경찰청	1,615	23개 경찰서 중 15개 기관에서 이관(65%)	
전북지방경찰청	251	15개 경찰서 중 6개 기관에서 이관(40%)	
전남지방경찰청	1,734	21개 경찰서 중 9개 기관에서 이관(43%)	
제주지방경찰청	0	3개 경찰서 모두 미이관(0%)	
서울지방경찰청	914	31개 경찰서 중 4개 기관에서 이관(13%)	
부산지방경찰청	953	15개 경찰서 중 4개 기관에서 이관(27%)	
대구지방경찰청	419	10개 경찰서 중 6개 기관에서 이관(60%)	
인천지방경찰청	49	10개 경찰서 중 2개 기관에서 이관(20%)	
대전지방경찰청	2	6개 경찰서 중 1개 기관에서 이관(17%)	
광주지방경찰청	204	5개 경찰서 중 2개 기관에서 이관(40%)	
울산지방경찰청 (해양경찰청)	0 284	4개 경찰서 모두 미이관(0%) -	
계		8,116 권	

* 지방경찰청 생산 형사사건 기록 이관연장 현황(총 2,573권): 대구지방경찰청(10,830, 1,610권) / 제주지방경찰청(10,102, 963권)

은 2권에 불과하다. 특히 소관 경찰서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 252개 경찰서 중 74개 약 30%의 기관만 해당 기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 보존기간 책정현황

현재 각 검찰청이 사용하는 기록물분류기준표에 형사사건 기록에 관한 단위업무 및 보존기간이 어떻게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을까. 〈표 3〉은 대검찰청과 인천지방검찰청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록물분류기준표 중에서 영구, 준영구, 30년에 해당하는 기록철명을 취합한 내용이다.

현재의 대검찰청과 인천지방검찰청의 기록물분류기준표 중, 보존기간 영구·준영구·30년에 해당하는 단위과제에는 사건기록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결정문철, 재판서원본철, 재항고기각철 등이 재판기록의 범주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기록철은 일반 행정기록 또는 사건관련 대장류에 해당한다. 현재 국가기록원에 가장 많이 이관되고 있는 ‘형사사건 기록’은 검찰청 기록물분류기준표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실제 형사사건 기록의 보존기간은 어떻게 책정되고 있을까.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 책정사례를 살펴보면, 공공기록법이 시행되기 오래 전부터 이어져 온

〈표 3〉 보존기간 책정기준 사례(2015.12. 현재 기준)

보존 기간	기록물분류기준표의 단위업무(기록물철)명	
	대검찰청	인천지검
영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인사자료, 인사기록카드, 퇴직자 인사카드, 인사발령원본철 - 상훈, 징계 - 사고기록반환부, 집행원부, 사고사건부, 결정문철, 재판서원본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방 등 통보대장 - 형집행정원부, 집행유예취소관계철 - 항소사건부, 상고사건 관리부 - 진정내사의견서철, 보석청구사건부 - 수형인명부, 검찰일지
준영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직 채용시험 응시원서철, 기간제근로자, 일용직 채용 - 재항고기각철, 불기소처분 재항고 사건처리부, 공조 회신, 형사법 공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미집행자 기록 - 청사경비, 기능직 일용직 채용
3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보고(부정식품, 환경, 의료, 국가소송 등) - 자유형미집행자검거관련 정보보고철 - 미군인 재판권불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형 미집행자 - 결정집행원부, 송치서부본철 - 압수부, 범죄사건부, 사건접수부 - 체포구속인 명부 - 수사지휘건의서철, 송치서부본철

경찰과 검찰의 생산기록 보존기간 책정의 대체적인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서 해당기록의 보존기간이 설명 가능한 기준에 따라 책정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일정하게 가능해 볼 수 있다.

〈표 4〉는 국가기록원 이관 후 CAMS에 등록·관리되고 있는 형사사건 주요기록의 일부 사례를 정리한 내용이다. 각 경찰청·검찰청 생산 여부를 불문하고 CAMS에서 관리되고 있는 동일명의 기록철 전체 분량을 추출하여 보존기간별로 구분한 것이다. 위의 기록철은 대부분 기록관리기준표·기록물분류기준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개별 법령에서도 공소시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대장류 기록의 경우, 경찰 ‘범죄사건부’의 보존기간은 30년부터 영구까지 편차가 큰 반면 검찰의 ‘내사사건부’, ‘형사사건기록보존부 등’은 거의 영구로 책정되고 있다. 검찰의 ‘형사사건

기록’과 경찰의 ‘내사종결철’은 99%가 영구로 책정되었다. 반면에 경찰의 ‘수사종결철’은 준영구와 30년, ‘사건송치서’ 역시 준영구와 30년으로 책정되는 일정한 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포함하고 있는 경찰의 ‘범죄사건부’, ‘수사종결철’에 대하여 보존기간을 영구부터 30년까지 구분할만한 합당한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주요사건 해당철, 경미한 사건 해당철을 불문하고 검찰의 ‘형사사건기록’ 전체, 주요사건과 경미한 사건이 같은 기록물에 묶여 있는 경찰의 ‘내사사건철’ 전체를 영구로 책정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는 좀 더 따져 볼 일이다.

다른 측면에서 동일기능에 해당하는 기록철의 보존기간 책정 현황을 동일 기관내의 사례를 통해서 검토해 보자. 2015년 현재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한 기록 중 CAMS 검색을 통해서 보존기간을 확인해 보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고소고발사건관리부’,

〈표 4〉 주요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사례(2015.12. 현재)

구 분	영구	준영구	30년	기타
범죄사건부(3,597권) (검찰 581/경찰 3,016)	723(20%)	1,590(44%)	1,204(33%)	80(2%-20년 이하)
내사사건부(1,461권) (검찰 1,419/경찰 42)	1,418(99%)	43(0.8%)	-	-
형사사건기록보존부(2,933권) (검찰 2,933)	2,887(99.6%)	46(0.8%)	-	-
형사사건기록(11,637권) (검찰 11,637)	11,484(99%)	43(0.4%)	63(0.4%)	47(0.2%-20년 이하)
내사종결철(7,554권) (검찰 10/경찰 7,544)	1,449(99.2%)	4,196(65%)	1,876(30%)	33(0.5%-20년 이하)
수사종결철(7,566권) (검찰 29/경찰 7,537)	329(4.3%)	3,615(48%)	3,615(48%)	7(20년 이하)
사건송치서(10,931권) (검찰 6,630/경찰 4,301)	285(2%)	4,999(46%)	5,029(47%)	618(5%-20년 이하)

‘공소장 및 기록송부부’, ‘공조사건부’, ‘공판사건 기록관리부’, ‘내사사건부’, ‘진정사건부’, ‘항고 사건부’ 각각의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30년으로 다양하다. 이들 기록에는 여러 유형의 사건관련 정보들이 사건발생 순으로 등재되어 있다. 예를 들면, ‘고소고발사건관리부’의 보존기간을 영구, 준영구, 30년으로 구분할만한 적절한 이유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는 기록 생산부서 업무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결과로 밖에 해석할 여지가 없다.

형사사건 기록에 대한 보존기간은 형사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공소시효 기간과 대검찰청 예규인 〈영구(준영구) 보존할 중요사건기록 등의 선별 및 관리지침〉 등에 따르고 있다.⁵⁾ 검찰 기록은 사건기록(재판확정기록, 불기소사건기록, 진정내사사건기록), 재판기록(판결, 결정문, 약식명명문), 행정기록(정보보고, 일반행정기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이현정, 2010, p 172). 이러한 기록 구성을 염두에 두고 볼 때, 각 검찰청의 기록물분류기준표에는 소위 행정기록만 포함되어 있을 뿐 사건기록과 재판기록의 대부분은 거기에서 제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3 기록 편철현황

형사사건 기록은 업무 절차보다는 생산 또는 접수 순서에 따라 편철되고 있다. 즉 형사사건 기록은 편년체식 편성방식에 따라 생산·접수 순서에 따라 가철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이현정, 2010, p. 86). 최소한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경찰의 사건기록 편철사례를 보면, 이러한 기록 편철관행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찰에서 411건의 사건기록을 합철한 〈표

5) 〈표 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형사사건기록’ 11,637권 중 99%에 해당하는 1,148권이 생산 당시 보존기간 영구로 책정되어 있다.

5)의 '수사종결사건철'⁶⁾이 대표적 사례이다.

〈표 5〉는 411건의 사건기록을 함께 편철한 '수사사건종결철'에 포함된 죄명을 제시한 내용이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위의 '수사사건종결철'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오물청소법 위반부터 국가안보 관련 범죄(군형법 위반,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금융 범죄(유가증권 위조) 등이 합철되어 있다. 즉 경찰 조직의 기능별

또는 범죄유형별 구분이 없으며 사건 발생·처리순으로만 합철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형사사건 기록 중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가장 많은 기록유형으로서 경찰 생산 '사건종결철'과 '내사종결철' 사례를 살펴보자.

〈표 6〉과 〈표 7〉의 기록은 경북지방경찰청 구미경찰서가 생산하였으며 현재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어 관리되고 있다. 이 기록의 보존기

〈표 5〉 수사사건종결철 편철 사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존속폭행 / 식품위생법 위반 / 향토예비군법 위반 / 절도, 특수절도 / 장물보관, 장물취득, 장물운반 /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 사기 / 도로교통법 위반, 도로운송차량법 위반 / 업무상과실치사 / 업무상 횡령 / 배임 / 상습절도 / 강간, 강간치상 / 중과실치상 /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 공무상 표시무효 / 공갈미수 / 주거침입, 야간침입 절도 / 미성년자 간음 / 오물청소법 위반 / 군형법 위반 / 점유이탈물 횡령 / 이용사 및 미용사법 위반 / 병역법 위반 / 열관리법 위반 /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유가증권 위조 / 도박 / 재물손괴
--

〈표 6〉 사건종결철⁷⁾ 편철 사례

피의 범죄유형	편철 건수(총 201건)
도로교통법 위반/교통사고특례법 위반	47건
도박	41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40건
향토예비군법 위반	15건
절도	11건
횡령/사기	각 8건
사기	8건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 위반	5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4건
식품위생법 위반/실화(방화)/강도상해/미성년자보호법 위반	각 3건
강간(미수)	2건
민방위기본법 위반/업무상 배임/고물영업법 위반/업무상 과실/혼인빙자 간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공무상 표시은닉/음반에 관한 법률 위반/장물취득	각 1건 총 9건

6) 〈수사종결사건철(1976.11.15.-1976.11.30.)(5401-5700)(제22호)〉, 광주지방경찰청 동부경찰서 수사과, 1976.(관리번호: 성남 CA0287476). 총 411건에 대해 경찰은 기소 192건, 기소중지 88건, 불기소 82건, 이첩 42건의 송치 의견을 내고 있다.

7) 〈사건종결철(1987.3-2)〉, 경북지방경찰청 구미경찰서 수사과, 1987.(관리번호: 성남 CA0299069). 송치의견은 기소 112건, 불기소 42건, 기소중지 31건, 기소유예 10건, 이첩 10건이다.

〈표 7〉 내사종결철⁸⁾ 편철 사례

건명	주요내용	수사의견
탄원사건에 대한 종합수사 보고	미상자로부터 12주 상해	계속수사
민원사건에 대한 수사보고	테잎 판매대금 560여 만원 미납	범죄혐의 없음
민원(진정)사건에 대한 종합 수사보고	교통사고로 8주 상해	형사책임 없음
민원(진정)사건에 대한 종합 수사보고	건설현장 장비 대여비 미납	형사책임 없음
민원(진정)사건에 대한 종합 수사보고	건설현장 공사비 미지불	형사책임 없음
첩보하명에 대한 내사보고	무허가 골재 채취	혐의 없음
첩보하명에 대한 내사보고	지하 이발관 퇴폐행위	혐의 없음
첩보하명에 대한 내사보고	여관 퇴폐행위	혐의 없음
범죄 첩보사건에 대한 수사보고	공단 전자제품 절도	범죄사실 없음
범죄 첩보사건에 대한 수사보고	절도행위 공모	범죄사실 없음
민원(진정)사건에 대한 종합 수사보고	공연료 지급 미수행	범죄혐의 없음
안전사고(추락)에 대한 종합 수사보고	추락 상해 3개월	범죄혐의 없음

간은 모두 영구로 책정되어 있다. 위의 ‘수사사건종결철’과 ‘내사종결철’ 역시 범죄유형별 분류를 반영하지 않았다. 재판결과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종 결과를 확인할 수 없지만, 기록 내용으로 볼 때, 영구보존 해야 할 만큼의 보존가치를 갖는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더구나 위의 ‘내사종결철’에는 대부분 범죄혐의가 없다거나 형사책임이 없다는 수사의견이 부기되어 있다. 보통 내사단계에서 범죄혐의가 있어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 범죄사건부에 등재하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 경찰 생산 ‘내사종결철’ 대다수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종결된 사건의 결과물이다. 이처럼 적절한 기준없이 영구보존으로 책정되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될 경우, 보존기간 재평가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기록들이 국가기록원의 서고에 영구히 보존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음으로는 검찰 생산 형사사건기록의 보존기간 책정 사례와 문제점을 검

토해 보자.

〈표 8〉에서 〈형사사건기록(93 형189)〉은 1950년대 후반의 주요사건 중에 하나인 진보당사건 관련자들의 기록으로서 영구보존으로 분류하는데 이건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불기소사건기록 1권, 무죄판결을 받은 나머지 2권의 기록을 내용에 근거해서 판단해 볼 때, 보존기간을 영구로 책정한 것에 의문이 생긴다. 그 이유는 첫째, 방화, 식품위생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 등은 범죄의 유형이나 내용이 특별하지 않으며 발생건수 또한 적지 않다. 둘째, 불기소사건 기록은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하며 무죄, 면소, 형의면제, 공소기각 또는 선고유예의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공소시효 기간 동안 보존한다는 검찰 내부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검찰보존사무규칙, 제8조 및 제9조). 셋째, 재판결과 무죄로 판결이 난 사건을 영구로 보존하는 것은 인권침해 등 또 다른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8) 〈내사종결철(4권) (1987)〉, 경북지방경찰청 구미경찰서 수사과, 1987.(관리번호: 성남 CA0298698).

〈표 8〉 ‘형사사건기록’ 편철 사례⁹⁾

기록물철명 (생산년도, 보존기간)	주요내용	사건수 (책수)
〈형사사건기록(93 형189)〉 (1958년, 영구) ㉠	조봉암 등 11명에 대한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서울특별시 경찰국, 서울지검, 서울지법의 수사, 공소, 소송 기록	11건 (42권)
〈형사사건기록(○○○)〉 (1967년, 영구) ㉡	〈현주(現住) 건조물 등 방화〉 사건에 대한 대전지검의 불기소사건 기록	1건 (1권)
〈형사사건기록(92 346)〉 (1993년, 영구) ㉢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 10만원을 구형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판결한 대구지법 의성지원의 형사 제1심 소송 기록	1건 (1권)
〈형사사건기록(93 형189)〉 (1993년, 영구) ㉣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으로 벌금 30만원을 구형받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판결한 대구지법 제1심 소송 기록	1건 (1권)

현장의 주장도 있기 때문이다.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경찰은 ‘수사사건종결철’ 처럼 다수의 사건을 한 권에 합철하는 방식으로 기록철을 편성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1개 사건이 다수의 기록철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경찰과 검찰의 형사사건 기록 편철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수많은 형사사건 기록이 동일명으로 편철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경찰의 ‘수사종결철’, ‘내사종결철’, 검찰의 ‘형사사건기록’이라는 기록철이 수천 권 또는 수만 권에 이르는 실정이다.

3. 개선방안

3.1 기록관의 형사사건 기록 관리

형사사건 기록 생산기관 기록관리의 공통된 결함은 해당기관 기록관으로 기록이 모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산·정리과정에 기록관이 전

혀 개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필자는 2014년부터 국가기록원의 특수기록관 및 해당기관 기록물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3년간 근무하면서 각 검찰청 및 경찰청(경찰서)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 대개의 기관에는 아키비스트가 관리하는 기록관 및 부속 서고가 있으며, 현직 경찰 및 검찰공무원 등이 관리하는 사건기록 서고와 압수물 등을 관리하는 서고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아키비스트가 관리하는 서고에는 주로 행정기록이 관리되고 있다. 물론 각 기관 기록물 생산현황 보고, 기록물 이관시에는 기록관을 거치고 있으며 기록관과 일정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여타의 형사사건 기록 관리과정에서 아키비스트는 배제되고 있다. 실제로 형사사건 기록의 생산, 분류 및 편철, 보존기간 책정 등은 해당기관의 아키비스트가 아닌 별도의 업무담당자들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다. 보존기간 책정 역시 기록관리기준표(기록물분류기준표)가 아닌 개별법 또는 검찰보존사무규칙 등 자체 규정에 따르고

9) ㉠ 〈형사사건기록(93형 189)〉(42권, 서울중앙지검, 1958, 관리번호 BA0802897(영구)), ㉡ 〈형사사건기록(○○○)〉(1권, 대전지검, 1967, 관리번호 BA0928615(영구)), ㉢ 〈형사사건기록(92 형346)〉(1권, 대구지검 의성지청, 1992, 관리번호 BA0847246(영구)), ㉣ 〈형사사건기록(93 형189)〉(1권, 대구지검, 의성지청, 1993, 관리번호 BA0847251(영구)).

있다. 영구보존 대상 기록 선별도 마찬가지이다. 대검예규에 따르면 현재 형사사건 기록 중 영구(준영구) 보존대상 기록 선별 역시 현직 검사 위주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있다(영구(준영구) 보존할 중요사건기록 등의 선정 및 관리지침).¹⁰⁾

공공기록법에 경찰과 검찰이 생산한 기록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형사사건 기록 관리가 기록관리 법령, 제도, 지침 등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대 기록관리의 흐름이 생산단계부터 지적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라면, 해당 기관 기록관이 형사사건 기록 담당부서로부터 이관대상 기록을 받아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전달하는 역할에만 그쳐서는 안된다. 최소한 아키비스트와 기록관이 행정기록뿐만 아니라 해당기관 형사사건 기록의 생산 정보를 공유하고 정리·관리하는 과정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영구(준영구) 보존대상 형사사건 기록 선별에 필요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하며, 현직검사 중심의 선정위원회도 좀더 개방하여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공공기록법에 예외적인 사항으로서 별도의 취급규정(제18조)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의 현황 검토과정에서 노출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 기록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공공기록법에 취지대로 기록관이 행정기록뿐만 아니라 형사사건 기록 관리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필요

하다면 경찰과 검찰의 내부규정 개정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3.2 사건유형별 구분 편철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현재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형사사건 기록의 경우, 동일한 이름을 가진 기록철이 수천 권 또는 수만 권에 이른다. 물론 기록철 표지에는 생산년도와 생산부서가 표기되어 있다. CAMS에 등록될 때 관리번호가 추가되기도 하여 동일명이라도 중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동일명/동일년도/동일부서명의 기록철이 1권 이상 생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활용시 기록철 속에 포함된 건명을 일일이 확인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기록 생산 단계에서부터 풀어야 할 문제인데, 동일명의 기록철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소한 형사사건 유형을 구분하고 그 유형구분을 기록철 편성의 상위 범위로 설정하는 방안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예컨대 국가기록원이 경찰과 검찰생산 기록 기술 결과에 반영된 형사사건 기록 분류현황을 보면 <표 9>와 같다.

<표 9>의 분류는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으며 경찰과 검찰에서 생산한 기록을 사건유형별로 범주화한 내용이다.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경찰 생산기록은 위 표의 각 유형별 구분없이 합철되어 있다. 검찰 생산기록 역시 유형별 구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사건별로

10) 여기에서 지방검찰청 및 차장검사를 둔 지청에서는 '영구(준영구) 보존자료 선정을 위하여 위원장은 차장검사, 위원은 부장검사 또는 검사 2명 내지 6명, 간사는 기록보존 주무과장으로 한 영구(준영구) 보존자료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기록을 엄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9〉 경찰·검찰 생산 형사사건 기록 구분 사례

경찰	검찰
수사/경비/교통/외사/생활안전/정보보안	형사/강력/특수/조사/사건/반부패/공안/과학수사/공판송무/재판서/집행/수형인명부

여러 개의 기록철로 편성되는 방식이다. 위의 사건유형별 구분을 수용할 경우, 경찰의 업무 담당자들은 ‘수사중결철’, ‘내사중결철’을 편성할 때, 교통, 외사, 정보보안 등 동일유형의 사건만을 동일철에 편철하게 해야 한다. 검찰 역시 활용을 염두에 두고 모든 기록철에 ‘형사사건기록’이라는 철명을 부여할 것이 아니라, 형사, 강력, 반부패, 공안 등 상위의 구분자가 기록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식을 활용한다면 우선 수천 또는 수만 권에 달하는 동일명의 기록철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표 9〉의 구분유형을 반영할 경우, 경찰은 1/6, 검찰은 1/13로 동일철명의 수량을 줄일 수 있다. 이 방식의 두 번째 효과는 해당 기록철의 보존기간을 평가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다. 특히 경찰이 ‘수사사건중결철’이든, ‘내사중결철’이든 교통, 정보보안 등 유형별 구분없이 사건발생 순으로 동일 기록철에 합철하는 방식은 보존기간 책정, 활용 등 후속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 개별법의 규정에 따르고 있기는 하지만 기록철 편성단계에서 사건유형을 구분하는 사전조치를 취한다면, 검찰의 ‘형사사건기록’에 대한 보존기간 판단 역시 훨씬 쉬워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철·건을 관리의 기본단위로 하는 공공기록법 그리고 이를 반영한 CAMS의 등록방식과 검찰생산 ‘형사사건기록’의 편철방식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관리상의 미비점은 시급

히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이다. 검찰의 형사사건 기록은 여러 개의 기록철(소송기록, 증거기록, 수사기록, 재심·신청사건기록)로 구성되어 있다(대검찰청, 2012). 현재 경찰이나 검찰에서 사용하는 기록관리시스템에는 여러 개의 철(권)이 동일한 사건으로부터 생산된 기록이라는 정보를 담아내는 기능이 없다. 해당기록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어 CAMS에 등록될 때에도 마찬가지로 1개 사건에서 발생한 여러 개의 철·건 정보들을 해당사건과 연계할 수 있는 기능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여기서 케이스 파일의 대표유형으로 일컬어지는 형사사건 기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CAMS의 기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현재 CAMS의 기록철-기록건 2단계 등록방식을 형사사건 기록과 같은 예외적인 편철구조를 갖는 기록에 대해서는 (사건)-기록철-기록건 등 3단계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등록기능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3 보존기간 책정기준의 구체화

기록분류체계는 기록관리의 기초이며 영구보존 대상 기록 선별을 위한 기본 장치이기도 하다. 기록관리 현장에서 수행되고 있는 기록 분류의 구체적 또는 물리적 실체는 기록관리기준표·기록물분류기준표의 단위과제(단위업무) 또는 기록철 편성으로 나타난다. 현재 각 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기록관리기준표의 보존기간 책정방식은 기록 평가방식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기능분석 기법을 전제로 짜여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기록관리 현장에서는 정부기능분류 체계와 기록분류체계의 정합성이 미흡한 상태로 기록관리기준표가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이다(설문원, 2013, pp. 31-45). 더구나 경찰과 검찰의 현재 기록관리기준표·기록물분류기준표에는 범죄수사 기능, 그 기능에 해당하는 단위과제(단위업무) 자체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경찰과 검찰이 생산하는 형사사건 기록에 대한 보존기간 책정방식이 애초에 기능분석 기법을 전제로 하고 있지는 않다. 뿐만 아니라 내부규정대로 영구보존 대상 기록을 선별하는 검찰의 선정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알 수 없다. 국가 기록원에 이관된 '형사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을 사례로 판단해 보면, 사건내용의 보존가치를 꼼꼼하게 판단한 결과로 보기도 어렵다. 어쨌든 현재와 같이 전국의 각 경찰청·검찰청이 생산하는 수많은 형사사건 기록에 대하여 동일기능으로 산출된 기록이라는 이유 때문에 동일한 보존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인 관리방법이 아니다.

형사사건 기록 평가와 관련하여 이현정은 관련 법령의 규정을 넘어서 시민권 보장, 국가 배상, 정부 정책, 사회적 이슈, 역사적 재평가 등을 기준으로 검찰과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매크로 평가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이현정, 2016). 향후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필자는 동일 기능·유형의 사건이더라도 최소한 주요한 사건과 경미한 사건을 구분하여 보존기간에 차등을 두어서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물론 현재 검찰보존사무규칙이 있기는 하지만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며, 그 기준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록물분류기준표

또는 검찰 내부규정에 반영하여 기록관리 현장의 업무담당자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형사사건 기록을 활용한 사례연구가 활성화 되어 현황과 문제점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할 것이다. 또한 기록관리계, 역사학계, 법학계 등 인접 학문분야의 연구성과들이 축적되어야만 가능한 문제이기도 하다. 단기적으로는 경찰이나 검찰 내부에 축적된 경험의 반영으로 볼 수 있는 내부규정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주요사건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서 경찰 내부 훈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찰청 범죄수사 규칙'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이 훈령에는 주요사건을 범죄의 주체별·범죄대상별 주요사건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수사본부 설치여부·감청여부·공조수사 여부 등 수사양태를 기준으로도 주요사건을 구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강간·강제추행 사건, 증수뢰 사건, 살인 사건, 상해·상해치사 사건, 과실치사상 사건, 약취·유인·체포·감금 사건, 인신매매 사건, 환경관련 범죄, 절도 사건, 강도 사건, 사기·공갈 사건, 횡령·배임 사건, 선거관계 범죄, 금융·증권거래·기업경영 관련 범죄, 폭력단체 관련 범죄, 약물에 관한 범죄, 약물에 관한 범죄, 총기관련 범죄, 풍속관련 범죄, 교통사고 사건, 공안 범죄, 사이버 범죄, 기타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사건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유형인 '사기'부터 최근의 시대상황을 반영한 '사이버 범죄'까지 다양한 범죄의 종류가 제시되어 있으며, 종류별 범죄 중 주요사건의 기준을 매우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사기사건 중에서도 '현금 피해액 5억원 이상, 현금 이외의 피해액 10억원

이상의 사건' 등을 주요사건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이러한 사례 등을 활용하여 지금부터라도 해당 기준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은 기록수집 프로세스를 개선·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생산기관의 기록관리에 대한 낮은 인식, 국가기록원 및 각 기록관의 적극적인 역할의 미흡 등으로 일정 수준의 기록관리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 장의 검토과정에서 국가기록원에 이관되고 있는 형사사건 기록의 문제점들이 그 실례이다. 차선책이기는 하지만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으로 책정된 기록이더라도 이관시 국가기록원과 각 기록관이 이관여부를 한번 더 협의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각 기록관에서 제출하는 정보만으로 익년도 이관대상량을 정하고 이관일정만을 협의한 후, 기록 이관을 추진하는 방식을 보완하자는 것이다.

4. 결론 및 제언

현재 경찰과 검찰, 법원 등이 생산하는 형사사건 기록은 공공기록법의 테두리 밖에서 관리·운영되고 있다. 예컨대, 조직적으로 행정 기록 관리부서와 사건기록 관리부서가 분리되어 있다.¹¹⁾ 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들이 운영하

고 있는 기록관리기준표(기록물분류기준표)에도 대장류 기록을 제외하면 형사사건 관련 단위과제(단위업무)는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글에서 필자는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일부 기록을 대상으로 형사사건 기록의 이관·보존기간 책정 등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형사사건 기록 이관여부, 이관수량 등에서 기관별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둘째, 기록물분류기준표에 형사사건 기록 관련 규정이 누락되어 있다. 다만, 범죄 수사·재판업무 추진단계별 생산·접수순으로 기록이 편철되고 있다. 셋째, 각 경찰·검찰 생산 형사사건 관련 기록의 보존기간 책정에서 기관별 편차 또한 크게 나타난다.

이관대상 기록을 소장하고 있음에도, 이관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국가기록원과 각 기록관이 협력하여 미이관의 원인과 해소방안을 마련할 일이다. 문제의 핵심은 기록관리 현장에 주요기록을 선별하는 구체적인 장치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금부터라도 형사사건 기록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둘째, 분류체계와 연동하여 동일유형 사건기록이더라도 주요사건과 경미한 사건을 구분하여 보존기간을 달리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¹²⁾ 현재와 같이 동일 기능에서 생산되는 동일유형의 기록물에 차등없이 동일한 보존기간을 책정함으로써 보

11) 예를 들면, 기록관이 소속되어 있는 총무과는 행정문서를 관리하며,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관리는 기록관리과 또는 집행과에서 수행한다.(<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7148호, 2016.5.10., 일부개정)
 12) 이러한 개선방안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제도적 개선도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검찰 내부규정인 <검찰보존사무규칙>의 보존기간 규정에 따르면 재판확정기록 중, 사형, 무기의 징역·금고는 물론 10년 이상의 유기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영구, 10년 미만의 유기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준영구보존 해야 한다. 즉 '형의 종류'(형법 제41조) 중 자격상실·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를 제외한 모든 징역·금고형 이상 형사사건 관련 기록의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이며, 전체가 국가기록원 이관대상이다.

존가치가 낮은 다수 기록이 무차별적으로 중앙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되는 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

경찰·검찰·법원 등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사사건 기록 분류체계 마련은 또 하나의 과제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하나의 형사사건은 경찰·검찰·법원 등을 거치며 각 기관의 범죄 수사·결정·집행과정에서 각각의 기록을 남긴다. 그 기록은 기관(경찰, 검찰, 법원)을 넘나들

며 최종적으로 사건을 기소한 해당 검찰청에서 취합·편철되고 있다. 최소한 형사사건 기록에 관한 한 생산기관 단위의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하는 방법만으로는 전체 생산맥락을 담아낼 수 없다. 공통의 분류체계가 마련된다면, 이를 기존의 기록관리기준표에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은 차후의 검토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학계 및 관련 기관의 논의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대검찰청 (2012). 『2011 검찰청 형사사건기록 DB 구축사업 백서』.
- 박미숙 (1998). 형사사건의 신속한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경미한 죄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9-219.
- 설문원 (2013). 기록분류를 위한 정부기능분류체계의 적용 구조 및 운용 분석: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4(4), 23-51.
- 이상진 (2016. 8. 29). 세계기록총회 이후의 과제. 조선일보.
- 이현정 (2010). 형사사건기록의 분류방안 연구: 사안 파일(case file) 관리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0(1), 169-197.
- 이현정 (2016). A Study on the Assessment, Methodology for Criminal Case Records, 2016 ICA 서울총회 발표문, 123-131.

[관련법령]

- 경찰청훈령 제774호.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표1(폐지제정 2015.8.28.).
- 대통령령 제27148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2016.5.10.).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Lee, hyun Jeong (2010).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lassification for Criminal Case Files.

- Korean Society of Archives & Records Management, 10(1), 169-197.
- Lee, Hyun Jeong (2016). A Study on the Assessment, Methodology for Criminal Case Records. a presentaion of 2016 ICA Congress Seoul, 123-131.
- Lee, Sang Jin (2016. 8. 29). Challenges after 2016 ICA Congress Seoul. Chosunilbo.
- Park, Mi Sook (1998). A Study of Measureses to Expedite Minor Offences. Study Collection on Korea Institute of Criminology, 9-219.
- Seol, Moon Won (2013). An Analysis of the Application Framework of the Business Reference Model to Records Classification Schemes in Korean Central Government Agenc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4(4), 23-51.
- Supreme Prosecutors' Office (2012). 2011 DB construction business for Criminal Case Records of Prosecutors' Office's White paper.